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364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문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

담당변호사 양동수

변론 종결2024. 10. 31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94,106,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소취하서 내지 청구금액을 31,879,738원으로 감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,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모두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7. 9. 27.경부터 'C'이라는 상호로 스티커라벨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, 피고는 2007.경부터 'D'이라는 상호로 스티커 등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2012. 12. 12. 스티커, 라벨 및 상업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를 설립한 자이다.

나.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.경부터 피고로부터 의약품 스티커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고, E가 설립될 무렵부터 2023. 12. 31.경까지 E와 사이에 피고와의 종전의 거래방식과 동일한 거래를 계속 하였다.

다. 피고는 E를 설립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받았고, 원고는 그 무렵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F회계법인에게 2012. 10. 11.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매출채권 잔액이 163,041,576원이라는 내용의 채권-채무 잔액조회서(이하 '이 사건 잔액조회서'라 한다, 을 제4호증)를 작성해주었다.

라. 이후 E는 원고와의 물품거래를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. 10. 11. 기준 163,041,576원의 매출채권을 E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포함해 정산을 하면 63,095,59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1239호(본소)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액조회서가 위조되었고, 위 매출채권 양도도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140호(반소)로 E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. 한편 위 법원은 2024. 8. 9. E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, 원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다(이하 위 판결을 '관련 판결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7, 8호증,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후 피고로부터

공급받은 물품을 확인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는데, 2007. 12.부터 E가 설립한 무렵인 2012. 12. 31.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보다 피고에게 선입금한 물품대금이 294,106,871원을 초과하므로,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294,106,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, ① 피고가 E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무렵 원고는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F회계법인에게 2012. 10. 11.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매출채권 잔액이 163,041,576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고, 원고는 이 사건 잔액조회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, ② 원고는 이 사건 잔액확인서 작성 이후 E가 설립될 무렵부터 2023. 12. 23.경까지 피고와의 거래방식과 동일하게 E와 오랜 기간 동안 물품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거래 종료를 위한 정산 이전까지 피고 내지 E에 대하여 이 사건 잔액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, ③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잔액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오히려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기재된 2012. 10. 11. 기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63,041,576원의 매출채권을 E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갑 제4 내지 6호증, 제9호증의 1 내지 5, 제10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. 12. 31.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보다 피고에게 선입금한 물품대금이 더 많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홍진표